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전환(단체→개인) 특별약관

제1조(목적)

이 특별약관은 단체실손의료보험^{주1)}(이하 '단체실손'이라 합니다)의 피보험자 등과 보험회사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 사이에 단체 실손을 개인실손의료보험^{주2)}(이하 '개인실손'이라 합니다)으로 전환(이하 '개인실손전환'이라 합니다)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- 주1) 단체실손의료보험: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7-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을 말함
- 주2) 개인실손의료보험 : 노후·유병력자·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함

제2조(개인실손전환에 관한 사항)

- ①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자가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였던 자는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전환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.
 - 1. 단체실손에 가입한 단체의 피보험자인 경우
 - 2. 직전 5년간 연속으로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인 경우(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 계약당 1개월 이내이고,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며, 단체실손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금번 단체실손종료일^{주1)}로부터 개인실손전환 청약일까지 기간은 제외함). 다만, '14.10.16.이후 단체실손을 '비실손보장형(정액형)'으로 가입한 경우 '비실손보장형(정액형)'으로 가입한 기간은 단체실손의 가입기간에 포함합니다.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인실손전환 직전에는 단체실손의 '실손보장형'에 가입^{주2)}되어 있어야 합니다.
 - 주1) 단체실손 종료일이란 개인실손전환 계약자가 금번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이전에 단체실손에 가입·종료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금번 개인실손전환 청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단체실손 종료일을 말함
 - 주2) 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전환 제도 시행 이후부터 단체보험 보장기간 종료전에 '비실손보장형(정액형)'을 가입한 임·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전환 가능
 - ※ 개인실손전환 계약자가 '비실손보장형(정액형)'에서 보장받은 담보와 유사한 담보의 개인실손으로 전환
 - 예시) 비실손보장형(정액형) : 상해질병 입원일당 담보 → 개인실손 : 상해급여/비급여, 질병급여/비급여 담보
-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실손전환 계약자(이하 '계약자'라 합니다)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개인실손전환은 이루어집니다. 다만, 다수의 회사가 단체실손을 분할하여 인수한 경우 계약자는 해당 회사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.
- ③ 회사는 계약자의 개인실손전환 청약을 받고, 개인실손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, 승낙한 경우에는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. 이 경우,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.
- ④ 회사는 개인실손전환이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단체실손이 개인실손으로 전환되었음을 서면, 전화(음성녹음), 전자문서(SMS 포함)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.
- ⑤ 계약자는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인실손전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 청약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 약관을 따릅니다.
- ⑥ 회사는 계약자가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할 때에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(제8항 및 제9항 포함), 개인실손전환 전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및 개인실손전환 시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, 청약 후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.
- [7] 회사는 개인실손전환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인실손전 환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. 또한, 회사가 개인실손전환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.
- 8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실손전환을 승낙합니다.
 - 1.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기준으로 단체실손의 보험수익자가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수령한 보험금과 보험사고가 발생했지 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. 다만,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'비실 손보장형(정액형)'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포함함.
 - 2.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기준으로 계약자가 직전 5년간 10대질병^{주)}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

은 사실이 없는 경우

- 주) 10대질병: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(뇌출혈, 뇌경색) ⑨당뇨병 ⑩에이즈(AIDS) 및 HIV 보균을 말함.
- 3. 다음 각 목의 모두에 대해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과 개인실손전환 전 단체실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(다만, 회사가 개인실손전환 전 단체실손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을 판매하지 않거나 또는 보유^{주)}하지 않고 있어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자기부담금 등을 개인실손전환 전 단체실손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봄)
 - 가. 보장종목
 - 나. 보험가입금액
 - 다. 자기부담금
 - 주) 보유하는 개인실손이란 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당시에 판매했던 개인실손을 말함
- ⑨ 회사는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이 개인실손전환 전 단체실손보다 보장이 강화(보장종목 추가, 보험가입금액 증액, 자기부 담금 축소 등)되는 등 제8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심사를 하여 승낙하거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, 별도의 조건(보험가입금액 제한, 일부보장 제외, 보험금 삭감, 보험료 할증 등)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.
- ①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할 때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(제8항의 제1호 및 제2호 포함)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개인실손전환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.

제3조(기타 사항)

- 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의 약관을 따릅니다.
- [2] 회사는 개인실손전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
- ③ 회사는 개인실손전환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